

계약직직원인사관리 시행세칙

여수시도시공사 제정 2014.1.2. 세칙 제13호

제정 2017.11.17. 세칙 제9호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직원의 채용조건과 절차, 평가 및 공무원 전환,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계약직직원(이하“계약직원”이라 한다)의 운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“계약직원”이라 함은 특수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 중 한시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에 의하여 채용하는 자를 말한다.

제 2 장 채용

제4조(채용대상 분야) 계약직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수탁시설 인계·인수를 위한 T/F팀 구성
2. 특수시설 또는 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
3. 기술진단 감리 및 기술지원 업무
4. 시험·검사 업무
5. 업무전산화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
6. 환경, 건축, 전기, 토목 등 전문분야
7.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판매시설 등 관광시설 운영분야

- 8. 보상 등 사무보조를 위한 행정분야
- 9. 전 각 호의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

제5조(채용자격) 계약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[별표 1]의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제6조(채용결격사유) 인사규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직원이 될 수 없다.

제7조(채용절차) ① 계약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인원, 업무내용, 응시자격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이사장은 인력충원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원을 선발하며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.

제8조(계약기간) ① 계약직원의 계약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.

②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9조(채용구비서류) ① 계약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신규 채용 시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채용 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근로계약) ① 계약직원의 채용은 [별지 제1호 서식]에 의한다. 다만, 계약당사자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② 근로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날인하고,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제11조(근로계약의 해지) ① 이사장은 계약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

1.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
 2. 신체, 정신상의 이상 및 기타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경우
 3.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된 때
 4. 공단의 취업규정상 의무를 위반한 때
 5. 제6조 규정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(다만,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.)
 6. 이 세칙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해지 조건에 해당한 때
- ②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2조(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) ① 계약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규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계약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 임용될 경우에는 계속 근무로 본다. 다만 호봉산정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장 보수지급 등

제13조(보수결정 등) ① 계약직원의 보수는 봉급과 제수당 등을 말한다.

② 계약직원의 봉급은 보수규정 제6조 제1항에 준하여 계약하되, ‘계약직원 봉급기준표’ [별표 2]내에서 정한다.

③ 채용되는 계약직원이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기준호봉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 계약직원의 보수계약 기간은 공단의 회계년도 기간 중으로 한다.

⑤ 계약직원의 보수 지급일은 보수규정 및 취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14조(제수당 등) ① 계약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복리후생비는 보수규정 및 취업규정에 의한다.

② 제1항의 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 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가급 : 일반 3급 상당
2. 나급 : 일반 4급 상당
3. 다급 : 일반 5급 상당
4. 라급 : 일반 6급 상당
5. 마급 : 기능 9급 상당

제15조(여비지급) ① 계약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여비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여비지급 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가급 : 3급 상당
2. 나급 : 4급 상당
3. 다급 : 5급 상당
4. 라급 : 6급 상당
5. 마급 : 기능 9급 상당

제16조(4대보험) 계약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, 고용보험의 적용은 일반직원에 준한다.

제17조(퇴직급여) 1년 이상 근속한 계약직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한다.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보수규정에 따른다.

제 4 장 복무 등

제18조(복무 등) ① 계약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단 취업규정을 준용한다.

② 계약직원의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2조 [별지 제3호 서식]에 의하여 작성, 기록,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9조(근무성적 평정) ① 계약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 근무성적을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, 정기평정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수시평정은 인사관리상 필요한때에 실시하며, 평정결과는 계약의 변경, 연

장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영한다.

②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 전 여수시도시공사 계약직직원 인사관리 시행세칙으로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【별표 1(제5조 관련)】

계약직원 채용자격기준

직급	응 시 자 격
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박사학위자로서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·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석사학위자로서 7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· 국가기술자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 · 국가기술자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· 공무원 6급 이상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3급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·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나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석사학위자로서 4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· 국가기술자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· 공무원 7급 이상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4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·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다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석사학위자로서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·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학사학위자로서 6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· 국가기술자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· 국가기술자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· 공무원 8급 이상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5급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·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직급	응 시 자 격
라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학사학위자로서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· 국가기술자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6급사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·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마급	<p>위 “가” 내지 “라”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·기술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</p>

【별표 2(제13조 관련)】

계약직원 봉급기준표

(단위: 원)

등 급	봉 급		등급기준
	상한액	하한액	
가 급	해당 등급기준 봉급기준표 30호봉 상당액	해당 등급기준 봉급기준표 1호봉 상당액	일반3급
나 급			일반4급
다 급			일반5급
라 급			일반6급
마 급			기능9급

※ 매년 정규 임·직원의 총 인건비 인상률 이내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인상률을 적용

【별지 1호 서식(제10조관련)】

근로계약서

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0 0 0 (이하 “공단”이라 함)과 0 0 0 (이하 “근로자”이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.

1. 근로계약기간

- 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.
- ② “공단”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“근로자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1.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
 2. 신체, 정신상의 이상 및 기타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경우
 3.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된 때
 4. 공단의 취업규정상 의무를 위반한 때
 5. 계약직 직원 인사관리 시행세칙(이하“세칙”라 한다.) 제6조 규정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(다만,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.)
 6. 이 세칙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해지 조건에 해당할 때

2.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

- ① 근무장소(부서) :
- ② 업무내용 :
- ③ “공단”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“근로자”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.

3. 근로조건

- 직 종 :
- 보 수 : 월 원(단, 초과근무수당 등 별도지급)
- 근로시간 : 1일 8시간, 1주 40시간
 - “공단”은 필요한 경우에는 “근로자”과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무

일을 탄력적으로 운영가능하다.

- 휴게시간 : 1일 1시간(근무시간에 따른 조정가능)
- 휴 일 : 「근로기준법」 제55조에 따른 주휴일,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(5월 1일) 및 「관공서의 공휴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(일요일 제외)은 유급휴일로 한다.
- 기 타 :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사규(계약직 직원 인사관리 시행세칙 등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년 월 일

(공단) 주 소 : (전화 :)
기관명 :
대표자 : (서명 또는 인)

(근로자) 주 소 : (전화 :)
주민등록번호 :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